

# 지제 더샵 센트럴파크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코로나 관련 건본주택 운영 안내

-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건본주택은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운영합니다. 홈페이지(http://jije-thesharp.com/)를 통하여 확인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에 한하여,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일정과 실시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청약-계약 관련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세한 문의는 분양 상담 전화(☎ 031-651-1210 / 031-652-1210 / 031-654-1210 )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 급히 공급하는 주택은 후분양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용검사(2021.07.12.) 된 주택으로 마이너스옵션제를 실시할 수 없으며, 건본주택을 별도로 건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된 동·호수의 마감재를 본 아파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아파트는 2019년 9월 24일 임시사용승인에 따른 입주 이후 2021년 7월 12일 사용검사가 완료된 아파트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9년 9월 26일부로 2년 차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종료되므로 입주 후 2년 차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됨을 인지하시고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용검사 (2021.07.12.)된 후 분양 아파트이므로 마이너스옵션제를 실시 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사용검사 (2021.07.12.) 된 후 분양 아파트로써 상기 공급되는 모든 동·호수는 발코니 확장시공이 되어 있는 아파트이므로 미확장 시공이 불가함
- 본 아파트는 준공된 세대이므로 세대의 기시공된 기본옵션, 플러스 옵션 등 모든 내부여건을 파악하고 계약해야 하며, 기시공된 사항에 대해서 발생 되는 문제에 대해 변경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한지처분 승인 완료 시 대지권 등기가 가능하고 한지처분 시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자격확인 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 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7.0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9.27.입니다. (청약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모두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③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전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아파트 1:2순위	○	○	○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 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신청자 청약 제한사항" "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확인" "주택 소유확인" 등 청약 제한사항 확인이 가능하오니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청약 제한사항을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이며, 「주택법」 제63조 관련 비투기과열지구 및 「주택법」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대출 제한(LTV, DTI 등), 청약 제한, 전매제한 등이 적용되는 민영아파트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에 의거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 거주 '성년자'와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 거주 '성년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평택시 고시」 제2021-51호에 의거 하여, 평택시 6개월 이상(2021. 03. 27. 이전 거주) 거주 신청자가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 신청자 및 전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 신청자 및 전국 거주 신청자로 청약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청약이 가능한 '성년자'란 ①「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9세 미만이나 혼인으로 성년 의제 되는 자) / ②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③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 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 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7호 및 제4조 제5항에 의거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의거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사업주체로 제출해야 합니다.
  -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6개월 이상(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거주해야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90일 이상, 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당첨되는 것은 「주택법」 제65조 제1항에 위반하여 계약체결 이후에도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사례 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으로 청약 불가(단,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 사례 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
    - 사례 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 지역 및 기타지역 대상으로 청약 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주택 및 '분양권 등' ]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의 주택 소유 예외사항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 11.> 부칙 제3조)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1. 분양권 등부터 취득에 따라 주택 소유자가 되는 날
        - 권리구분란에서 "공급계약-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계약일,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권 등으로 보지 아니함.
          - 가. 시행일(18.12.11) 전 공급계약된 건
          - 나. 시행일 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된 건
          - 다. 시행일 전 사업계획승인(지역주택조합) 신청된 건
          - 라. 시행일 전 관리처분계획승인(정비사업) 신청된 건
      - 권리구분란에서 "전매-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잔금지급일
        - ※ "공급계약 - 준공 후 - 분양권(입주권)" "전매-준공 후-분양권(입주권)의 경우 주택으로 등기되므로 검색 결과상 동일물건이 있는 경우 1주택으로 처리됨.

2. 분양권 등 처분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게 되는 날

- 권리구분란에서 "전매 - 준공 전 - 분양권(입주권)"인 경우 잔금지급일

-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검색되어 나타났으나 증여, 경매, 공매 등으로 처분된 경우 당사자가 소유했던 공급계약서에 다른 사람에게 명도된 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 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2의 기준에 따름)을 말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청약과열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경우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 당첨 인정, 후 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jije-thesharp.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 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일반공급 1순위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 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 제도'가 적용됩니다.

**(주택형별 가점·추첨제 공급비율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75%, 추첨제 25%)**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합니다. (노부모부양, 생애 최초 특별공급 포함)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 함. (2순위로 청약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인 자녀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손녀를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단, 청약 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 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 된 예비 공급세대수만큼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 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일반공급의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 의사를 표시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 세대의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1순위 전체(기타지역 포함) 경쟁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하여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1.09.27.)'이며, 면적은 '주거전용면적'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등(초)본',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거 부적격 통보일로 7일의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해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상 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 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공급신청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신청할 경우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 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본 아파트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재당첨 제한기간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 기간 (당첨일로부터)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 제7호)	7년간

※ 2020년 4월 16일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한 주택의 재당첨 제한 적용 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 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청약 제한사항 확인]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부적격 당첨자(또는 계약자)의 당첨(또는 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 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 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남은 세대에 대한 임의공급/입주자모집공고 재분양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합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제한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며,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전매제한기간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3년) ※ 단,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 투기 적발자 처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 취소, 10년간 청약자격 제한되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 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자(전매포함)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평택시는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 및 당첨자선정업무 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합니다.

구분	입주자모집공고	일반공급 1순위(해당) (평택시 6개월 이상)	일반공급 1순위(기타) (평택시 6개월 미만, 전국)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자격확인 서류 제출	계약체결
일정	2021.09.27.(월)	2021.10.07.(목)	2021.10.08.(금)	2021.10.12.(화)	2021.10.18.(월)	2021.10.23.(토)~10.28.(목)	2021.10.29.(금)~11.02.(화)
비고	청약자격 등 판단 기준일	인터넷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 Home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사무실 방문 접수 ※ 사전 방문 예약제 (정부방침에 따라 변동 가능)	
장소	일간지 계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청약홈'			경기도 평택시 동삭1로 22번길 40 지제더샵센트럴파크 단지내 도서관 ※사전예약자도 확인 후 방문바람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 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아파트 공급을 위한 주요 내용을 표기한 것으로,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등 제반법령이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 주택과 - 40694호(2021.09.2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 위치 : 경기도 평택시 동삭1로 22번길 40
- 공급 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최고 27층, 16개동, 총세대 1,280세대 중 조합원 851세대, 선분양(일반분양) 335세대를 제외한 후분양(일반분양) 94세대
- 입주예정월 : 2021년 11월
- 공급대상

(단위: m<sup>2</sup>,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 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표기	세대별 계약면적(m <sup>2</sup> )						세대별 대지비율(m <sup>2</sup> )	공급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계약면적		총 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최하층 배정 세대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영주택	2021000696	01	059.6236A	59A	59.6236	20.2214	79.8450	1.9623	29.7334	111.5407	41.7768	12	12	-
		02	059.7656B	59B	59.7656	19.8666	79.6322	1.9669	29.8042	111.4033	41.8763	4	4	-
		03	074.9929A	74A	74.9929	23.8855	98.8784	2.4681	37.3978	138.7443	52.5456	10	10	-
		04	074.9744B	74B	74.9744	24.3448	99.3192	2.4675	37.3886	139.1753	52.5327	10	10	-
		05	074.7312C	74C	74.7312	23.7368	98.4680	2.4595	37.2673	138.1948	52.3623	24	21	3
		06	083.7111	83	83.7111	25.7729	109.4840	2.7550	41.7454	153.9844	58.6543	16	15	1
		07	084.7982	84	84.7982	26.0932	110.8914	2.7908	42.2876	155.9698	59.4160	18	16	2
합 계											94	88	6	

※ 상기 공무상 면적과 대지비율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방식으로 인해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약식 표기	주택형	세대수	동호수	분양가격			계약금 (20%)	잔금 (80%)
				대지비	건축비	총분양가	계약 시	계약체결 일 + 30일
59A	059.6236A	12	312동 301호	54,244,272	320,705,728	374,950,000	74,990,000	299,960,000
			306동 402호 306동 403호 312동 401호	54,244,272	335,875,728	387,120,000	77,420,000	309,700,000
			306동 503호 315동 602호 312동 802호 306동 1001호 306동 1004호	54,244,272	345,055,728	399,300,000	79,860,000	319,440,000
			316동 1201호	54,244,272	349,925,728	404,170,000	80,830,000	323,340,000
			316동 2002호 315동 2101호	54,244,272	356,415,728	410,660,000	82,130,000	328,530,000
59B	059.7656B	4	308동 603호 304동 702호	54,373,460	344,926,540	399,300,000	79,860,000	319,440,000
			304동 1303호	54,373,460	349,796,540	404,170,000	80,830,000	323,340,000
			304동 2103호	54,373,460	356,286,540	410,660,000	82,130,000	328,530,000
74A	074.9929A	10	302동 204호	68,226,931	384,633,069	452,860,000	90,570,000	362,290,000
			303동 301호	68,226,931	396,003,069	464,230,000	92,850,000	371,380,000
			301동 401호 303동 401호 303동 404호	68,226,931	405,733,069	473,960,000	94,790,000	379,170,000
			302동 704호 301동 801호	68,226,931	413,853,069	482,080,000	96,420,000	385,660,000
			301동 1104호 303동 1401호	68,226,931	423,593,069	491,820,000	98,360,000	393,460,000
			303동 2004호	68,226,931	428,463,069	496,690,000	99,340,000	397,350,000
			74B	074.9744B	10	308동 301호 308동 304호	68,210,100	397,639,900
308동 401호 304동 404호	68,210,100	408,999,900				477,210,000	95,440,000	381,770,000
308동 704호 308동 801호 308동 904호	68,210,100	417,119,900				485,330,000	97,070,000	388,260,000
304동 1304호 308동 1701호	68,210,100	425,229,900				493,440,000	98,690,000	394,750,000
308동 2001호	68,210,100	431,719,900				499,930,000	99,990,000	399,940,000
74C	074.7312C	24	302동 102호 302동 103호 310동 103호	67,988,842	362,151,158	430,140,000	86,030,000	344,110,000
			302동 202호 302동 203호 311동 202호	67,988,842	383,251,158	451,240,000	90,250,000	360,990,000
			303동 302호 303동 303호	67,988,842	394,611,158	462,600,000	92,520,000	370,080,000
			302동 402호 303동 402호 311동 403호	67,988,842	404,351,158	472,340,000	94,470,000	377,870,000
			303동 503호 303동 602호 310동 603호 302동 703호 301동 803호 311동 803호 303동 1003호	67,988,842	412,471,158	480,460,000	96,090,000	384,370,000

			303동 1303호 302동 1402호 301동 1403호 310동 1403호 303동 1802호	67,988,842	420,581,158	488,570,000	97,710,000	390,860,000
			303동 2002호	67,988,842	427,081,158	495,070,000	99,010,000	396,060,000
			313동 203호	76,158,562	405,921,438	482,080,000	96,420,000	385,660,000
			305동 302호 307동 302호 309동 302호	76,158,562	418,911,438	495,070,000	99,010,000	396,060,000
			307동 402호 309동 403호	76,158,562	428,641,438	504,800,000	100,960,000	403,840,000
			307동 502호 314동 702호 314동 902호	76,158,562	436,761,438	512,920,000	102,580,000	410,340,000
			305동 1102호 309동 1103호 313동 1402호 305동 1503호 309동 1803호 305동 1902호	76,158,562	448,121,438	524,280,000	104,860,000	419,420,000
			305동 2202호	76,158,562	454,621,438	530,780,000	106,160,000	424,620,000
			305동 204호 313동 201호	77,147,582	411,422,418	488,570,000	97,710,000	390,860,000
			307동 304호 313동 301호 313동 304호	77,147,582	422,782,418	499,930,000	99,990,000	399,940,000
			305동 401호 307동 401호 307동 404호 309동 404호	77,147,582	432,522,418	509,670,000	101,930,000	407,740,000
			309동 701호 305동 1001호	77,147,582	442,262,418	519,410,000	103,880,000	415,530,000
			313동 1401호	77,147,582	453,632,418	530,780,000	106,160,000	424,620,000
			305동 2204호 309동 2204호 305동 2301호 314동 2404호 305동 2501호 314동 2501호	77,147,582	461,742,418	538,890,000	107,780,000	431,110,000
83	083.7111	16						
84	084.7982	18						

· 주택형표시안내

공고상(청약시)주택형	059.6236A	059.7656B	074.9929A	074.9744B	074.7312C	083.7111	084.7982
약식표기	59A	59B	74A	74B	74C	83	84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 홍보관 및 카탈로그 /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 및 추가품목(유상옵션)제외 금액임.

※ 상기 공급되는 동·호수 일부 중 추가 품목(유상옵션)이 설치된 동·호수가 있으며, 추가 품목(유상옵션)이 설치된 동·호수에 한하여 공급계약 체결 시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비 외 별도 금액이 발생함.

(304동 2103호 : 시스템 에어컨 일반 거실+안방, 316동 1201호 : 시스템 에어컨 일반 거실+안방 / 전기시스템오븐, 303동 1003호 : 시스템 에어컨 고급 거실+안방, 305동 2301호 : 펜트리 시스템 가구, 310동 103호 : 시스템 에어컨 일반 거실+안방, 309동 2204호 : 시스템 에어컨 일반 거실+안방+침실1,2 / 빌트인 냉장고 / 빌트인 김치냉장고 / 식기세척기 / 하이브리드 쿡탑)

※ 주거 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 모집 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 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 환산방법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공통사항**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본 아파트는 2019년 9월 24일 임시사용승인에 따른 입주 이후 2021년 7월 12일 사용검사가 완료된 아파트임을 숙지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는 2019년 9월 26일부로 2년 차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종료되므로 입주 후 2년 차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됨을 인지하시고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금액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용검사 (2021.07.12.)된 후 분양 아파트이므로 마이너스 옵션제를 실시 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사용검사 (2021.07.12.) 된 후 분양 아파트로써 상기 공급되는 모든 동·호수는 발코니 확장시공이 되어 있는 아파트이므로 미확장 시공이 불가함
- 본 아파트는 준공된 세대이므로 세대의 기시공된 기본옵션, 플러스 옵션 등 모든 내부여건을 파악하고 계약해야 하며, 기시공된 사항에 대해서 발생 되는 문제에 대해 변경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 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위 시설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상가 대지지분을 제외한 아파트 대지지분에 대한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의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함.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본 아파트는 사용검사 (2021.07.12.)된 아파트이므로, 잔금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건물)가 가능하며,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및 동삭도시개발사업조합의 사업일정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본 아파트는 준공인가 완료된 아파트로써 납부 일자 이전에 잔금을 납부하여도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음.
- 본 아파트는 사용검사 (2021.07.12.)된 아파트로써 잔금 대출을 사업주체에서 알선하지 않으며, 계약금 및 잔금은 상기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에 따라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입금하여야 함.(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주택담보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은행과 별도의 주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신용문제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함.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청약 접수를 받아 동·호수를 추천함.
- 당첨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대화상의 착오로 인해 응답하지 않음.
- 매수자는 본 표시 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매수자가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 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기본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27) 현재 평택시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외 동포(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인 1순위 청약 불가하며, 2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이 가능한 '성년자' : ①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9세 미만이나 혼인으로 성년 의제 되는 자) ②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③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 되어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 1순위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므로 세대주 요건을 갖출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은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는 청약과열지역으로 **1순위 청약자격제한, 1순위 청약접수일정 분리, 추첨제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이 적용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일반공급 1순위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 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주택형별 공급비율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75%, 추첨제 25%)

- **1순위 청약접수 시 주택 소유 여부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입주자 선정기준(가점제/추첨제)이 분류됩니다.**

-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 구성원 포함))에 속한 자
-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 구성원 포함))에 속한 자

거주 구분	청약 순위	자격요건 및 안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주택건설지역 : 평택시 6개월 이상 거주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li> <li>• 기타지역 :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지역 거주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li> </ul>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필수 자격요건(아래 ①~⑤ 모두 해당되어야 함)</li> <li>①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가입기간 2년 이상</li> <li>② 입주자저축 인정금액 : 입주자저축 별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예치 기준금액(납입인정금액) 충족</li> <li>③ 세대 구성원 : 세대주</li> <li>④ 주택 소유 :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포함)</li> <li>⑤ 당첨 사실 : 최근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 사실이 없는 자(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포함)</li> </ul>
	2순위	<p>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p> <p>※ 2순위 청약 제한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과거 투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구성원)</p>

■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구분	평택시 및 기타지역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에 따라 지역별, 주택 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 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 주택 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 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산정은 현행과 동일함)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지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저축 별 예치금액(납입인정금액) 및 가입 기간 충족요건**

구분	충족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예치 기준금액 이상의 잔액 충족 및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순위별 가입 기간 경과
청약예금	청약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예치 기준금액 이상의 예치금 충족 및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순위별 가입 기간 경과
청약부금	매월 납입한 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형의 예치 기준금액 충족 및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순위별 가입 기간 경과(85㎡이하 주택형만 청약신청 가능)

- ※ 기타 입주자저축 안내
- 청약저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청약예금으로 변경하여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잔액 기준 범위 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
  - 청약부금 : 85㎡초과 주택형에 청약하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청약예금으로 변경하여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3조,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 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이상 ~ 9년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20	
		1년이상 ~ 2년미만	4	10년이상 ~ 11년미만	22	
		2년이상 ~ 3년미만	6	11년이상 ~ 12년미만	24	
		3년이상 ~ 4년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청약 신청자 본인은 부양 가족수에서 제외 ※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불가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	-	
합 계	84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 접수방식 : 주택형태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1순위(해당), 1순위(기타),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 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중복 청약접수 관련 유의사항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본인이 동시 청약(1인 1건만 신청 가능)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을 인정합니다.  
- 청약과열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 당첨 인정 후 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 관련 입주자저축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1.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 제한 :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 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등 기준일 관련 청약신청자격 변경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 까지 : \* 청약예금의 신청 주택 규모를 작은 면적에서 큰 면적으로 공고일 전일 까지 변경한 경우 청약 가능  
\* 청약부금은 85㎡초과 주택형에 청약하기 위해 공고일 전일 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면적 및 지역별 예치금 충족시 청약 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공고일 전일 까지 전환하여 면적 및 지역별 예치금 충족시 청약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고일 당일까지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충족시 청약 가능  
\* 세대 구성원에서 공고일 당일까지 세대주 변경 시 자격 충족  
- 청약 접수일 당일까지 : 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 간 예금금액 차액 발생 시,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시 청약 가능 (감액사유시 변경 불필요)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 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 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 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 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

- **검색대상** : 청약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565호 제3조)

1.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 계획(지역주택조합)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2.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주택 및 분양권 등 처분 기준일** (1, 2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7호의2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단독지분을 공유로 상속받은 경우와 공유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 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출입문으로 별도공간이 분리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 단독거주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공유지분 만큼의 면적으로 산정함.

-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 [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출입문으로 별도공간이 분리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 단독거주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공유지분 만큼의 면적·가격으로 산정함.

10.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 분양권 주택 소유 판단 예시(경쟁 발생 여부는 최초 접수경쟁률로 판단함)

- 청약접수결과 경쟁 발생 : 정당 계약자 및 잔여 세대 추가계약자 모두 주택 소유

- 청약접수결과 미달 발생 : 정당 계약자 주택 소유, 잔여 세대 추가계약자 주택 미소유 (단,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잔여 세대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 소유)

구분	공급세대	접수	정당 당첨자 계약②	잔여 세대		잔여 세대 추가계약①	주택 소유 판단
				미분양(가)	미계약(나)		
A유형(타입)	100	200(경쟁)	100	X	X	-	②주택 소유
B유형(타입)	100	200(경쟁)	80	X	20	20	②주택 소유 / (나) 주택 소유
C유형(타입)	100	50(미달)	30	50	20	70 *	②주택 소유 / (가), (나) 주택 소유 아님
D유형(타입)	100	50(미달))	50	50	X	50 *	②주택 소유 / (가) 주택 소유 아님

① 사전예약, 사후추가접수, 사업주체 선착순 모집에 의한 계약

② 정당 당첨자 계약은 모두 주택 소유로 봄.

\* 경쟁 미발생으로 미달된 경우 정당 당첨자가 계약 포기 후 미분양분이나 미계약분을 계약할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계약취소 물량을 재공급 받는 경우에는 모두 주택 소유로 간주함. -계약해지로 인한 재공급 분양권도 주택 소유로 간주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도권 1억 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③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등'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 판정 기준 및 '소형·저가주택 등' 특례기준이 경합할 경우의 적용기준

경합	주택수	적용기준
규칙 제53조 각호(5호 20㎡이하 제외) ⊕ 소형·저가	1	소형·저가주택 특례 미적용
규칙 제53조 5호(20㎡이하) ⊕ 소형·저가	2	5호 미적용 및 소형·저가 특례 미적용
규칙 제53조 각호 ⊕ 제5호(20㎡이하)	1	5호 미적용
규칙 제53조 각호(5호 20㎡이하 제외) ⊕ 제6호(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소유)	0	모두 적용
규칙 제53조 제2호(농어가주택 등) ⊕ 제6호(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소유) ⊕ 소형·저가	1	소형·저가주택 특례 미적용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 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6개월 이상 거주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가점제 당첨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 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낙목)에 의한 높은 점수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추첨제 무주택자 우선 공급 :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세대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② 나머지 25%의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에게 공급

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세대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1순위 추첨제로 공급 신청할 때에는 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 승낙 여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1 분양권 등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처분조건 승낙이 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 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 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태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 세대수만큼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입주자 선정시 선 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시 제출한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http://jije-thesharp.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합니다.

####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일반공급 모두 인터넷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대면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 청약 제한사항 및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청약신청 시 청약자가 입력(선택)한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거 당첨자와 세대구성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주택 소유현황, 청약 제한사항 등을 전산 검색하여 당첨자 또는 세대구성원의 청약 제한사항,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 제한 사항이 발생하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 합니다. 또한, 당첨(계약)취소 세대는 공급유형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III 청약 신청일정, 신청방법 및 장소

#### ■ 신청일정 및 장소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③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일반공급	1순위(해당지역)	2021.10.07(목) 08:00~17:30	인터넷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C : www.applyhome.co.kr</li> <li>스마트폰앱 : 청약홈</li> </ul> </li> <li>정보취약자 : 청약통장 가입은행</li> </ul>
	1순위(기타지역)	2021.10.08(금) 08:00~17:30		
	2순위	2021.10.12(화) 08:00~17:3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 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4항에 의거 일반공급 1순위 청약접수 시 평택시 6개월 이상(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거주 신청자와 그 밖의 지역에 거주 신청자의 청약신청 접수일을 분리하였으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거주기간에 따라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택시 6개월 이상 거주자 : 1순위(해당) 접수일에만 청약 가능 / -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전국지역 거주자 : 1순위(기타) 접수일에만 청약 가능

※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 후 입력하여야 합니다.

※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 순위 청약신청일 08:00 ~ 17:30)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청약 전 "청약자격확인", "청약연습", "청약가점 계산", "청약가상체험"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청약예정자에게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모든 은행 청약자)**

[PC 청약 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 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 청약신청」⇒「Step2. 주택형 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 소유 및 각종 청약 제한 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 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 취약계층(고령자, 인터넷 취약 장애인 등) 방문청약

일반공급은 모두 인터넷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 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대면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 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 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용 공공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 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 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용 공공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IV

당첨자 발표 및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 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일반공급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021.10.18.(월)</li> <li>•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li> <li>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li> </ul> </li> <li>*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청약이 불가하여 은행 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 기간은 주택 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 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을 위해 아래 제출기한까지 공급(당첨)유형별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제출장소
<p>일반공급 당첨자</p> <p>※ 예비입주자 제출 기간, 제출방법 등은 개별 통보</p>	<p>2021.10.23.(토) ~ 2021.10.28.(목) 10:00 ~ 17:00까지</p> <p>*정부방침에 따라 변동 가능</p>	<p>경기도 평택시 동삭1로 22번길 40 지제더샵센트럴파크 단지 내 도서관</p> <p>*사전 방문 예약제로 접수예정이나 정부방침에 따라 변동 가능</p>

- ※ 예비입주자(특별/일반)의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시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간 이내 방문이 불가한 입주대상자는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 기간 이내에 자격확인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단, 이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절차로 계약 진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상 누락 등 자격확인이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 기간 내(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대상	서류 발급 기준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주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기록 대조일을 생년월일 ~ 현재까지로 설정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복무확인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또는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가점제 예비입주자)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 30세 미만 청약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국내거소신고증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발급대상이 아닐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기록 대조일을 생년월일 ~ 현재까지로 설정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소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기록 대조일을 생년월일 ~ 현재까지로 설정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비자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출생년도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 지정으로 발급)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 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대리인 제출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위임용(본인 발급용)
	○	위임장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통보 받은 자	○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본 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 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모든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10.18.(월) ~ 2021.10.27.(수)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 소통방 > 당첨 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대상
	제공일시	2021.10.18(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V**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및 계약금을 확인 후 계약 기간내 지정된 공급대금계좌로 계약금 납부 및 계약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계약장소를 방문하시어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장소	문의전화	비고
2021.10.29.(금) ~ 2021.11.02.(화) 5일간, (10:00~17:00)	경기도 평택시 동삭1로 22번길 40 지제더샵센트럴파크 단지 내 도서관	031-651-1210 031-652-1210 031-654-1210	사전 방문 예약제로 계약체결 예정이나 정부방침에 따라 일정, 장소, 시간 등이 변동 가능

- 계약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 입금 후 입금증 주택홍보관 제출[주택홍보관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1순위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자격 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분양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아파트 분양금액	국민은행	857201-00-096983	(주)무궁화신탁	

- 상기 입금계좌는 분양금액 납부계좌임(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가능)
- 상기 입금계좌에 분양금액, 발코니 확장공사비, 추가 품목(유상옵션) 계약금을 합산하여 비용을 납부해야 함.
- 분양금액은 약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 시 비교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예시 - 101동 101호 계약자 → '10101홍길동' / 102동 102호 계약자 → '1020102홍길동')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 서류 (특별공급 포함)	○		계약금(무통장입금증)	-	· 계약금 무통장입금 영수증 및 입금확인서 (계약금 현금 수납 불가)
	○		신분증	계약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통)
	○		주민등록등본	계약자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인감도장	계약자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 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대리인 신청 및 계약 불가
일반공급		○	주민등록초본	계약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 및 세대주 여부를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주소변동사항 포함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배우자 분리세대)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비속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미혼인 만30세 이상 직계비속(1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이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피부양자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피부양과 주민등록표상에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직계비속	·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무주택 소명서류	-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	·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당첨 사실 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제3자 대리인 계약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주택홍보관 비치)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인감도장	계약자	· 용도 : 아파트 위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b>(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b>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상기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인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아래 참조)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당첨자 계약체결 기간 준수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한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 기간 내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기간 종료 이후 부적격세대 및 미계약세대 발생 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예비입주자 공급 이후 잔여 세대 발생 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추첨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지정 계약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거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주택소유현황, 청약제한사항 등을 전산검색하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등으로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를 미제출 또는 제출하였으나 확인 필요사항 누락, 생략 등 자격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 통보 및 소명 안내**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주택 소유 또는 청약제한사항 등이 있는 경우**(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 할 수 있음) 및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확인결과 부적격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는 유선 또는 대면, 서면의 방법으로 입주대상자에게 부적격 통보하며, 그 통보일로부터 7일의 소명 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계약 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거 부적격당첨자의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 사실 삭제 요청서(견본주택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 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1.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 기간중에 있는 경우
  2.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제1순위로 공급 신청할 수 없는 자가 제1순위로 공급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 2의2. 제28조 제6항에 따라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3.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한 번 이상 특별 공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54조 제1항 각 호의 주택에 당첨된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가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 이종당첨자, 본인 중복신청/당첨자, 부적격 재당첨자 처리 기준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 청약과열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 당첨 인정, 후 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청약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번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등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또는 분양 일정상 계약한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 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당첨유형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관계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수신현황 및 입주대상자의 자격확인절차 등 분양 일정상 계약 완료 이후 일정 시점(중도금 1회차 납부 전)까지는 사업주체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자체점검, 재 검수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사항 확인 시 당첨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전매, 부정청약,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적발 시 계약 완료 상당시간 이후(입주 전까지)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체결조건

- 평택시는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청약과열지역 내 모든 주택 매매계약 (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 세대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1항에 따라 추첨제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공급 받은 경우 본 아파트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소유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지 않으면 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소유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최초 공급계약자가 기존주택처분 서약 미이행 및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공급계약이 취소될 경우 명의변경을 통하여 분양권을 매수한 양수인은 그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사업주체 등에게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인지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 이전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정부수입인지를 종이 문서로 발급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온라인 발급 또는 은행 및 우체국 등 방문 발급) 받아야 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급계약 체결일 이후 정부수입인지 발행 시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임.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 입주 및 유의사항

- **입주지정 기간** : 공급계약서상의 **잔금납부 개시일로부터 +45일** (단, 잔금 완납(공급금액+발코니 확장공사비+추가 품목(유상옵션이 설치된 계약자에 한함))일이 입주지정 기간보다 빠를 경우 입주 가능)
- 본 아파트는 잔금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음.
- **입주지정 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함. 단, 입주지정 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함.
-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입주지정 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 및 제세공과금(재산세 등) 등은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 기간 내 입주 시에는 실입주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며, 입주 전 인테리어 공사를 선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일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고, 인테리어 공사 시 발생 되는 쓰레기, 폐기물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 계약자는 **입주지정 기간 내에 잔여 분양금액(잔금),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 및 비용(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계약금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함.
-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선정된 관리 주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함.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 태만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음.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 공용 제외) 및 부대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체 보관장소로 시행 및 시공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동절기 입주 시 세대 물청소 등의 사유로 통수 및 동파방지 사전난방이 진행되어 가스사용량이 발생 될 수 있으며, 분양세대 중 입주기한 내 입주세대는 입주개시 당일 이전까지, 입주지정기한 내 입주하지 못한 세대는 입주지정일 당일 까지 사전난방 관리가 진행되며, 이후 발생하는 동파방지 사전난방관리 및 가스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단, 키포출 세대는 키포출일 당일을 입주일로 간주하여 난방관리를 종료하고, 이후 발생하는 가스비용 및 관리는 키포출 세대 부담으로 함)
- 스마트홈 2.0어플을 이용하기 위한 고정IP는 입주 후 1년간 제공됩니다.

##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원/VAT포함)

약식표기	발코니 확장 공사 금액	계약금 (20%)		잔금 (80%)	
		계약 시	잔금 또는 입주지정일	잔금 또는 입주지정일	
59A	9,434,000	1,887,000		7,547,000	
59B	10,376,000	2,076,000		8,300,000	
74A	13,301,000	2,661,000		10,640,000	
74B	12,670,000	2,534,000		10,136,000	
74C	9,657,000	1,932,000		7,725,000	
83	14,831,000	2,967,000		11,864,000	
84	14,950,000	2,990,000		11,960,000	

(2)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국민은행	857201-00-096983	(주)무궁화신탁

•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금액 납부계좌와 동일하며, 계약체결 이전 분양금액, 발코니 확장공사비, 추가 품목(유상옵션) 계약금을 합산하여 비용을 납부해야 함.

(3)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사용검사(2021.07.12.) 된 아파트로서 마이너스옵션제를 실시 할 수 없으며, 공급되는 모든 동·호수에 발코니 확장시공이 되어 있으므로, 공급계약 체결 시 공급금액 외 별도 발코니 확장비용을 납부해야 함.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 추가 품목(유상옵션)

(1) 추가품목

(단위 : 원 / VAT포함)

약식표기	동·호수	금액	계약금 (20%)		잔금 (80%)		설치 품목
			계약 시	잔금 또는 입주지정일	잔금 또는 입주지정일		
59A,B	304동 2103호	2,990,000	598,000		2,392,000		시스템 에어컨 일반 거실+안방
	316동 1201호	3,490,000	698,000		2,792,000		시스템 에어컨 일반 거실+안방 / 전기스팀오븐
74A,B,C	303동 1003호	3,800,000	760,000		3,040,000		시스템 에어컨 고급 거실+안방
	310동 103호	3,300,000	660,000		2,640,000		시스템 에어컨 일반 거실+안방
84	305동 2301호	1,250,000	250,000		1,000,000		펜트리 시스템 가구
	309동 2204호	13,130,000	2,626,000		10,504,000		시스템 에어컨 일반 거실+안방+침실1,2 / 빌트인 냉장고 / 빌트인 김치냉장고 / 식기세척기 / 하이브리드쿡탑

(2) 추가 품목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품목 납부계좌	국민은행	857201-00-096983	(주)무궁화신탁

• 추가품목 납부계좌는 분양금액 납부계좌와 동일하며, 계약체결 이전 분양금액, 발코니 확장공사비, 추가 품목 계약금을 합산하여 비용을 납부해야 함.

(3)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사용검사(2021.07.12.) 된 아파트로서 상기 표의 동·호수에 추가 품목(유상옵션)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상기 표의 동·호수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 시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비 외 별도 추가 금액이 발생함.
- 상기 표의 동·호수에 따라 추가 품목이 있는 경우 추가 품목에 대한 별도 계약서를 체결해야 함.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품목을 설치요청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추가 품목에 대하여 설치해드리지 않음.
- 준공된 세대이므로 세대의 기시공된 기본옵션, 플러스 옵션 등 모든 내부여건을 파악하고 계약해야 하며, 기시공된 사항에 대해서 발생 되는 문제에 대해 변경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추가품목 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Ⅶ**

**단지 여건 사항**

※ 준공한 단지이므로 준공도면과 단지 주변의 여건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도시개발사업지구 여건 및 단지 외부 여건

- 평택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으며, 본 사업지에 적용되는 기반시설 공사는 완료되어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개발계획 변경 및 향후 차기 인허가 승인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광역도로 등 일부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본 지구 내 및 인근의 시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유입되는 중·고등학생은 평택시 및 인근지역 학교에 배치 가능함(단, 본 사항은 경기도교육청의 계획으로 향후 별도의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지의 통학구역은 동삼초등학교입니다.
- 본 사업지의 중학생은 평택 중학군(비전중, 세교중, 신한중, 평택중, 평택여중, 한광중, 한광여중, 용이중)에 여유 교실을 활용하여 배치됨
- 당 사업지 서측으로 공동주택용지, 남동측 일반주거지역이 위치하며 향후 공사가 진행될 경우 이로 인한 소음, 분진 및 교통정체가 발생할 수 있음
- 당 사업지 서측 30m 도로가 위치하고, 동측에는 동부고속화도로(30m 도로)가 예정되어 차량통행 및 공사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45번 국도 인접한 303~308동은 도로 소음 및 조망권 침해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도로와 인접 경계부 사이에 경관녹지, 완충녹지가 설치됨
- 비상도로의 일부 구간은 자전거 도로로 사용됨
-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주변에는 경관녹지, 완충녹지 등의 계획에 따라 전면조망 및 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 공부정리가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대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당해 지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임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본 단지는 지역난방이 공급되는 아파트이며, 이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지역난방 공급자인 평택에너지서비스(031-646-4200)에 문의하시기 바람
- 단지 인근에 근린생활용지, 주차장 용지, 공원 및 녹지 등에서 발생 될 수 있는 환경(간섭,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지지 않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 개발 등 주위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 (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부여건

※ 준공한 단지이므로 준공도면과 단지 주변의 여건을 확인하고, 다음의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임시사용승인(2019.09.27.)에 따라 입주 후 사용검사(2021.07.12.)을 득하였음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2019년 9월 26일부로 2년 차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종료되므로 입주 후 2년 차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됨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부대 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의 부대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민의 입주 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주동 계단실 내부의 바닥 마감은 지정 타일, 벽 마감은 지정도장으로 시공됨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법"(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법)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골프연습실(스크린골프 포함), 사우나실(남,여), 휘트니스센터, GX룸, 탁구장, 다목적 체육실로 구성되어 있음. (위치 312동 건너편)
- 실외 운동시설은 315동 및 316동 사이에 베드민턴 연습장(2개소)이 있으며, 308동 및 309동 사이에 농구 연습장(1개소)이 있음.
-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아파트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 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을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주동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등이 설치되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외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기준에 의해 배분되었으며,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부근에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설비 등 시설물로 인해 소음 및 시선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난방은 지역난방 방식임
- 단지 내 도시가스 공급 관련하여 가스 정압시설이 단지 내 배치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 및 308동, 309동 앞 지상 주차장은 공동주택(아파트)용 이며, 근생시설에 인접한 지상주차(총7대) 공간은 근생시설용임
-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아파트와 분리되어 있으나, 아파트 출입구를 같이 사용하여야 함.
- 해당 주택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 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 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함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 할 수 있음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 형태로 연결되는 동이 있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1개층(일부2개층)으로 각 동별 주차배분 및 주차구획까지의 거리에 차이가 있으며, 모든 동이 지하 2층과 연결되지 않음. (305,306,313,314동이 지하 2층과 연결되며, 304동의 경우 1,2호 라인 코어가 지하 2층과 연결이 됨) 이의 배치 및 사용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됨
- 311동, 314동 전면은 단지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사용되어 지며 차량 헤드라이트에 의한 눈부심 및 차량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308동, 309동 사이, 312동, 314동 사이 및 311동 인근에는 지하주차장 진 출입 램프가 설치되어, 시야 간섭 및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음
- 314동, 315동 인근에 2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며, 지붕층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어 저층부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으며 또한 전면에 근린생활시설용 지상 주차장이 설치되어 이용에 따른 소음 및 불빛 등의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음
- 307동, 308동, 309동 인근 및 314동, 315동, 316동 인근에 주민운동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및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주거동 인근에 설치된 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에 따른 소음 및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배치상 DA(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 분리수거시설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되었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 복리시설의 냉방관련시설 (실외기 등)이 지상층 단지 외부로 노출되어 통행 및 세대간섭,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위치, 형태 및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 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 되어질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 및 경관녹지, 완충녹지와와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타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단지의 마감 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 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지상 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엘리베이터 및 계단을 사용해야 함
- 본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지 주출입구, 부대 복리시설, 주차 출입구, 상가동 건물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 될 수 있음
- 305동 전면 및 313동 후면부와 근접하여 수공간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에 소요 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308동, 309동 전면에 지상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시야 간섭, 조명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302동, 309동, 310동, 311동, 314동 인근에 탐라이트(천창)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시선 간섭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312동 후면부 및 313동 인근에 선큰 및 외부 엘리베이터실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시야 간섭, 빛 반사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301동 1호세대 전면, 302동 2호세대 전면, 303동 1호세대 측면, 304동 1호세대 측면, 4호세대 전면, 305동 1호세대 전면, 306동 1호세대 측면, 307동 1호세대 측면, 308동 1호세대 측면, 309동 1호세대 측면, 310동 4호세대 전면, 311동 3호세대, 4호세대 전면 등에 DA (급배기구)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시선 간섭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보행 동선과 인접하여 탐라이트(천창) 및 DA(급배기구)가 계획되어 있어 산책 시 소음 및 시선 간섭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설물을 차폐하기 위한 식재 등 차폐물의 위치, 규모, 사양은 시공 중 변경되었을 수 있음
- 단지 내 Top Light는 지하주차장의 자연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로 구조적으로 취약하므로 절대 상부에 올라가서는 안되며, 이로 인하여 사고 발생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임
- 310동 1호세대 전면, 314동 1호세대 측면, 315동 1, 2호세대 전면에는 단지 내 레벨차를 이동하기 위한 경사로 및 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각 동 1층 일부에 유사시 사용되는 제연헬륨 DA가 설치되어 있어 경관, 소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314동 1호세대, 2호세대 전면 하부에 전기실, 발전기실 DA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각 동 전면에는 유사시 사용되는 안전매트 이용을 위해 수목의 식재가 제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사생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 복리시설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위치가 결정된 바, 이용상의 불편 및 인접 세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위치를 확인하기 바람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필로티 내부에 설치된 1층 주출입구의 경우 구조체로 인하여 개방감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주행 차량과 보행자들로 인해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 여건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 할 수 있으며, 동 출입구의 형태(평면 형태, 외관 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 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 함
- 단지 내 어린이안전구역을 이용하는 차량은 주출입구 진입 차량은 부출입구로, 부출입구 진입 차량은 주출입구로 출차 하여야 함
- 어린이집 부속 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 차량 동선을 위해 기존 도로의 변경 및 도로가 신설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 외벽 마감은 디자인 계획에 따라 석재쌓칠, 도장 등 및 석재가 혼용 적용될 수 있음(필로티 포함)
- 지하주차장, 부대 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의 배치 및 사용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람
- 각 동 1층 필로티 일부 또는 단지내에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음
- 각 동 1층 필로티의 개수 및 활용은 단지계획에 따라 동별 차이가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마감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계약 전 단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 Ⅷ

### 설계 관련 주요사항

※ 준공한 단지이므로 준공도면과 단지 주변의 여건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준공한 단지이므로 세대별 기시공된 옵션(기본형 옵션, 플러스 옵션)은 승계해야 하며, 마감된 사항은 준공도면과 샘플 세대를 통해 시공현황을 확인해야 함
- 각 세대의 물 사용 발코니에 선출통 및 드레인 등으로, 우천 및 인접 세대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세탁실, 다용도실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 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세대 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 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 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 시공됨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 시공됨
- 설비 배관 및 환기 관련 덕트 내부에는 일체 마감 (미장 또는 콘크리트 면처리) 이 시공되지 않음
- 세대 내부 경량 천장 내부 및 마루바닥 하부에는 벽체 마감 (타일, 도배지, 아트월) 이 시공되지 않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세대 발코니 내 대피공간에는 화재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동 출입부 계획에 의하여 2층 엘리베이터 홀에 채광창에 고층창인 등이 있으니 계약 전 확인 바람
- 각 층별 엘리베이터 이용에 따라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분양 카탈로그 및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함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인접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 될 수 있음
- 월패드, 주방TV 전화 수신기능은 국선 전화에 한하여 가능
- 입주자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하여,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 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함(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 전용 어플 및 세대인증 필요, 휴대폰 제어는 통신요금 발생)
- 단위세대 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 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함
- 각 세대 신발장, 창고, 방 또는 기타 내부에 세대 분전반, 세대 통신 단자함들이 개별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도면과 상이 할 수 있음
- 무선인터넷 사용을 위한 세대 내 무선 AP가 설치되며, 인터넷회선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에어컨 실외기실의 전원은 단상(1Ø x 220V x 60Hz)이 공급되므로 입주 후 제품 선정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세대 욕실 바닥 및 물쓰는 발코니 바닥은 물 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 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 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으로 인한 마감재 손상이 있을 수 있음
- 전 평형 욕실 내 샤워부스 바닥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단위세대 천장고는 거실 기준 기준층 2.3m 이며, 욕실과 실외기실, 다용도실 등 발코니 부분은 상이 할 수 있음
- 실외기실 상부에는 주방 배기를 위한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 일부 유니트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가스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고, 관련 법규에 의거 하여 주방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됨
- 세대 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 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의 다용도실과 실외기실의 천장에는 환기를 위한 세대 환기장치 및 환기용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됨(다용도실 천장에 세대 환기장치 설치 시 천장이 설치될 수 있고, 유지관리를 위하여 점검구가 설치됨)
- 세대의 냉매 배관은 기안로 되었으므로, 세대별 냉매 배관 및 시스템에어컨을 확인하여야 하며, 각 시스템에어컨의 추가설치는 불가함
- 실외기는 실외기실의 여건상 계약자가 희망하는 에어컨이 실외기실의 폭, 높이 및 전기사양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 불가할 수 있으므로 도면에서 이를 확인하고 에어컨 전문 업체 확인 후 설치하시기 바람
- 복도 및 세대 점유 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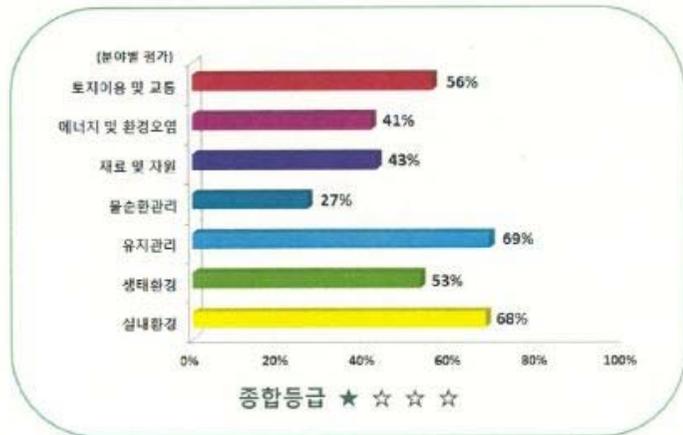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비 위치, 설치 개수 등
단열 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 조치를 준수
바닥 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 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다목)	-	해당 사항 없음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절수기기의 설치를 권장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공동주택 성능등급의 표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동삭 센트피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주: 동삭 센트피아 지역주택조합 준공(예정)일: 2019.09. 주소: 경기도 동삭지구 공동주택용지 1BL 층수: 지하2층, 지상27층 면적: 178,283.2221㎡ 건축물의주인명: 공동주택 설계자: ㈜우리창우 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2017-150 인증기관: 한국감정원 유효기간: 2017.06.23.-사용결과일 인증등급: 일반(그린4등급)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05호, 환경부고시 제2014-213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그린4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7년 06월 23일

한국감정원



\* 예비인증은 만년 건축물은 원금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공동주택명: 동삭 센트피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 신청자: 동삭 센트피아 지역주택조합
- 평가등급

1) 소음관련등급

성능분수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관방음차음 차단성능		★★★★
중상층차음 차단성능		★★
화장실 굴러우음		★★★★
세대간 방벽의 차음성능		★★★★
외부소음	공동주택도로 등외에 대한 방벽의 수평성	★

3) 환기관련등급

성능분수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수직연 환기	생활용 안구 환기지역의 피입성	★★★★
	우수이동	-
	환수도 설치	-
에너지절약	에너지절감	*
차기(환기)에너지절감	신재생에너지 이용	-
	미생화학수 배출 저감	★★
지구온난화저감	외조출 포도올 유해아 특출물입의 사용금지	★★★★

2) 구조관련등급

성능분수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기반성		★★
수리용이성	전통부분	★
	공용부분	★★
내구성		★★
지속가능한 자원을	주요구조부 재사용	-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비내력적 재사용	-

4) 생활환경등급

성능분수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 공간의 조성수준		★★★★
모텔차 도로	단지내 호텔차 전용도로 조성여부	★★★★
	외부화행차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
공동주택차량	대중교통과의 연결성	★★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
	도시여객자동차정류장이나 단차출입장의 거리	★★★★
사회적 약자의 배려	전용부분	★
	공동부분	★
출내부채고	출내부채고 승합시스템	★
생활환경	각 생활 시설준도 포함금지 재역여부	★★★★
생활안전	방범안전	★★
생태적가치	기존대지의 생태적 가치	-
인형대지 영향	일조권 간섭금지 대책의 피입성	-
세대내 일조확보율		★★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감을 저충의 저충	★★★★
	단위세대외 공기질측정 확보여부	★★★★
태기를 최소화	생활용 기구와 사재의 대체의 피입성	-
생활 폐기를 분리수거	생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물자를 버리지 않기	★
최대한 여유채용 사정	유용자의 생활을 위한 친환경인증제를 사용여부	★★★★
	재료의 완수에 출금 심모포시	★★★★
우수부하 절감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피입성	-

3) 환경관련등급

성능분수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생태친화적		★★
지반지반 녹지율		★
연계된 녹지축 조성		-
비오름 조성		★★★★
생태적가치	기존대지의 생태적 가치	-
인형대지 영향	일조권 간섭금지 대책의 피입성	-
세대내 일조확보율		★★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감을 저충의 저충	★★★★
	단위세대외 공기질측정 확보여부	★★★★
태기를 최소화	생활용 기구와 사재의 대체의 피입성	-
생활 폐기를 분리수거	생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물자를 버리지 않기	★
최대한 여유채용 사정	유용자의 생활을 위한 친환경인증제를 사용여부	★★★★
	재료의 완수에 출금 심모포시	★★★★
우수부하 절감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피입성	-

5) 화재소방등급

성능분수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화재소방	급지 및 경도설비	★
	제연설비	★
	내화 성능	★
	수질피난거리	★★★★
지난안전	화도 및 계단 유도록	★★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 「녹색건축 인증기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인증합니다.

2017. 06. 23

한국감정원



**IX**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li> <li>•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 (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li> <li>• 주택 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는 동삭도시개발사업 내의 공동주택용지에 공급하는 상품으로서, 동삭도시개발사업조합 등의 사정으로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시 대지권 설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타사 아파트의 마감 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사업시행인가도서(변경승인 및 신고 포함)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본 주택의 판매 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li> <li>•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 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을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li> <li>-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li> <li>-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 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li> <li>- 영리 목적 외국 법인의 국내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잔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잔금을 납부 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li> </ul> </li> <li>•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li> <li>• 계약자는 공급대상의 분양과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 부대 복리시설 : 경비실( 3개소 ), 어린이집/경로당( 2개소 ), 어린이 놀이터( 4개소 ), 주민공동시설( 2개소 ), 근린생활시설( 2개소 ), 주차장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하자보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됨.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건축	소방/정보통신	전기	구조
회사명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씨에아엔지니어링	(주)한국나이스기술단	(주)단이엔씨
감리금액	3,205,755,900원	561,000,000원	642,000,000원	107,800,000원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사	시공사	비고
상호	동삭센토피아지역주택조합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주소	경기도 평택시 현촌5길 16-13,201호(용이동)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괴동동)	
법인등록번호	176-82-64971	174611-0002979	

■ 홈페이지 주소 : <http://jije-thesharp.com/>

■ 주택홍보관 위치 : 경기도 평택시 동삭1로 22번길 40 지제더샵센트럴파크 단지 내 도서관

■ 분양문의 : ☎ 031-651-1210, 031-652-1210, 031-654-1210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 사항에 대하여 대하여는 주택홍보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주택홍보관에서 확인 바랍니다.